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24일(토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총5쪽)

작 성 과	국제협력과
작 성 자	사무관 박종배
전화번호	504-5145~6

한-멕시코 경쟁당국간 협력약정 체결 및 한-EU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공정위, 외국 공정거래당국과의 협력을 가속화

-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3일(금)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Federal Competition Commission)의 Fernando Sanchez Ugarte 위원장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 이어서 Mario Monti EU 경쟁당당 집행위원과 만나 제3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 이날 체결된 한-멕시코 경쟁당국간 협력약정은 2002년 9월에 체결된 한-호주 경쟁당국간 협력약정에 이어서 공정위가 두 번째로 체결하는 공정거래법 집행관련 국제협력협정으로서
 - 호주와 체결한 협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쟁당국간 법집행 협력에 관한 협정임
 - 이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체가 멕시코 국내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우리 공정위가 멕시코 경쟁당국에 문제 해결을 모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을 받은 멕시코 경쟁당국은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 지난 4.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에도 유사한 내용의 양국 경쟁당국간의 법집행 협력을 독립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FTA는 의회의 비준까지 거친 정부간 조약이라는 면에서 한-호 및 한-멕시코 경쟁당국간 약정(기관간 약정)과 차이가 있음
- 공정위는 그간의 양자협력협정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뿐만 아니라 금명간에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 흑연전극봉(2002.3월)과 비타민(2003.3월)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M&A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법집행의 국제화와 아울러서 기업활동의 세계화라는 공정거래법 집행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강철규 위원장은 EU의 Mario Monti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양 경쟁당국간에 법집행과 관련한 현안 및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 자리에서 양측은 현재 추진중인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집행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Microsoft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 등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음
- * 지난달 EU 경쟁당국은 5년 이상 끌어오던 조사를 마무리하고,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Microsoft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7백만 유로(약 6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고 현재도 다른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도 지금까지 2년 이상 계속 중인 Microsoft사에 대한 조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임

<첨부> 한-멕시코 경쟁당국간 협력약정의 주요 내용

□ 목적(전문 및 제1조)

- 협력·공조 촉진을 통한 법집행 효과 제고 및 갈등의 예방

□ 적용대상 경쟁법(제1조)

- 한 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
- 멕시코 : 경제경쟁에관한연방법률 및 하위 법령

□ 통보(제2조)

-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집행활동에 관하여 상대방에 신속히 통보
- 통보를 요하는 집행활동(예시)
 - 상대당국의 집행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쟁제한행위인 경우
 - M&A의 당사자가 상대국 기업인 경우
 - 상대국 영역에서의 행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 상대국 영역에 소재한 정보 탐색과 관련된 활동

□ 집행협력(제3조)

- 국내법과 합리적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경쟁제한행위의 적발 및 법집행에 상호 협력
 - 효과적인 경쟁법 적용과 상대방의 집행정책 및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의 공유
-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영역에서 증인·증거의 소재 파악 및 입수, 자발적 정보제출 등에 있어 상대 당국을 지원
 - 상대방의 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이를 제공
 - 상대방의 집행활동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인지할 경우에 이를 제공

□ 집행활동의 조정(제4조)

- 연관된 사안에 대해 집행활동을 수행할 경우 집행활동의 조정 및 공조를 검토
- 집행활동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때의 고려 사항(예시)
 - 집행목적 달성을 위한 양 당국의 능력에 미치는 효과
 - 양 당국의 상대적 정보입수 능력
 - 시정 조치의 상대적 효과성
 - 비용절감 가능성
 - 조정이 양국에 줄 수 있는 잠재이익
- 공조시에는 양 당국간 비밀정보의 공유 가능성에 대하여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

□ 적극적 예방 (제5조)

- 상대방 영역에서 행해지는 경쟁제한행위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당국에게 적절한 집행활동의 착수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받은 당국은 해당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집행활동을 착수할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요청 당국에게 그 결정을 신속히 통지
- 이것이 요청 당국 및 피요청 당국의 법집행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지 아니함

□ 갈등의 회피(제6조: 소극적 예방)

- 집행 활동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중요 이익을 신중히 고려
- 고려할 요소(예시)
 -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장소
 - 양국의 중요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

- 행위자에게 집행당국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의 국내법 또는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정도
- 양 당국간 조치의 상충 가능성
- 관련 자산의 소재지
- 시정조치의 상대적 효과성 등

□ 기술적 협력(제7조)

- 정보의 교환, 직원훈련을 위한 교류, 연수프로그램 강사 및 전문가 파견 등

□ 협 의(제8조)

- 이 약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을 받은 당국은 신속히 협의에 응함

□ 회 의(제9조)

- 양 당국 임원간 정례적 회의 개최위해 노력
 - 집행활동 및 중점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변화에 대한 토의, 약정의 운용에 관한 기타 관심사 등 논의

□ 정보의 비밀유지(제10조)

- 국내법 및 자국의 중요한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상대방이 제한한 조건에 맞게 활용
-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의 공개요청을 거부